국민안전 플러스

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7.(금)

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과 무관한 수입식품 행정규제 정비

- 「수입식품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'26.11.27~'27.1.6)
-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간소화
- 정보통신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영업자 보관의무 정비 등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**를 **간소화**하고, 건강기능식품 수입·판매업자의 불필요한 서류 보관 의무를 삭제하는 등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**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**을 **11월 27일 입법예고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유지하면서 **영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**하고, **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**('26.9.15 공포, '27.3.16 시행)에 따른 **하위법령**을 **정비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< 주요 개정 내용 >

- **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간소화**
- **건강기능식품 수입·판매업자의 불합리한 서류 보관 의무 정비**
- **조건부 수입신고 수리 제외 대상 기준 합리화**
- **영업자 요청 시 정부 수거·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**

❶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간소화

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(2년) **연장 신청** 시 **기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**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**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**한다.

또한, **현지실사**나 **해외식품 위생평가** 등을 통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**유효기간 연장 의사가 확인**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 없이 **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**한다.

* (현행) 유효기간(2년) 만료 전 연장신청서 및 정부 증빙서류 필수 제출

이를 통해 **영업자가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하게 하거나 별도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된다.

❷ 건강기능식품 수입·판매업자의 불합리한 서류 보관 의무 정비

건강기능식품 수입·판매업자에게 부과된 **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서 및 기능성 표시·광고 사전심의필증 보관 의무를 삭제**한다.

기능성 인정서 등 관련 정보는 '식품안전나라'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, 기능성 표시·광고 사전심의 제도도 자율심의로 전환된 만큼, 별도의 **서류 보관 의무를 정비해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.**

❸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 제외 대상 기준 합리화

최근 5년 이내 **조건부 수입신고* 조건**을 **위반**한 **영업자**는 **조건부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**하도록 **기준**을 **개선**한다.

* 조건부 수입신고란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이나 경미한 표시사항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제도

현재는 **조건부 수입신고 조건을 한차례 위반**하더라도 **영구적으로 조건부 수입신고가 제한**되어 영업자에게 **과도한 규제**로 작용할 수 있다. 이에 영업 등록 취소 시 재영업 등록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**유사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**해 **제외 기간을 합리적**으로 **정비**한다.

❹ 영업자 요청 시 정부 수거·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

현재는 정부 수거·검사 결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.

앞으로는 **영업자가 요청**하면 **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검사 결과를 통보**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 이를 통해 **영업자가**

자사 제품의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국민 안전을 최우선**으로 하면서 **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**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, 국민과 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**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자세한 내용은 **국민참여입법센터**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)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**개정안에 대해 의견**이 있는 경우 **2027년 1월 6일까지**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 창 근 (043-719-2170)
		담당자	사무관 제 권 모 (043-719-2168)